

【별표 3】

공무직근로자 전환 심사용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

(제16조 제4항 관련)

감 점 항 목		점 수
경고 등	경고 1회(음주운전, 성희롱·성매매 등으로 기관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)	10점
	경고 1회(그 밖의 사안의 경우)	5점
	주의 1회	3점
복 무	무단결근(1일당)	2점
	무단이석(1회 3시간 이상)	1점
	지각(월 3회 이상)	1점
불 친 절	불친절신고(YELLOW 카드)가 3회 이상 접수되어 조사결과 불친절로 확인된 자	2점